

건축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

/ 支部別 건축민원개선 의견 모음 /

이미 오래전부터 본회회원업무와 직결되는 각종 건축관계법규에 따른 지역별 민원사무가운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규정등에 대한 개선 내지 개정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도시건축현황에 걸맞게 건축행정도 탄력성있는 제도운용이 시급하고, 현실에 맞는 건축행정으로 업무의 능률화를 꾀해 건축계의 새질서 정립에 官과 민이 노력할 때임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본회가 支部別로 취합한 건축관계민원사무가운데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각종 사무내용을 소개해서 이의 빠른 개선방안을 모색키위한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아울러 건축관계 법규가운데에서도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골라 당국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뜻에서 그 의견을 제시해 봤다.

민원사무개선에 관한 의견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사정 및 건의사항	비고
서울지부				
① 공정보고서	서울시 행정취급규칙 제14조	매월 1. 15. 2회씩 제출됨.	민원서류처리 규정상 해당되지 않는 보고서로써 수차에 걸쳐 불필요성을 강조 폐지토록 건의하였으나 시행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② 준공시침부서류		시멘트 관련제품 검사확인증	관허제품으로 허가청에서 수시 확인 불량제품 생산업체를 규제강화 하므로써 별도 첨부폐지제도 개선 요망.	
③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28조	건축사법 제23조의②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특정건축물의 설계 감리업무를 수입하려면 합동사무소로 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행정처분시당해 설계감리자 외에 타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같은 양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 외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같은 양의 행정처분을 받게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부산지부				
① 건축허가 신청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 " " "	건축허가 신청시 가.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나. 확인서 다. 건축부지 증명원 라. 등기부 등본(매지) 마. 가옥대장등본 (기존건물증축시침부) 바. 입회 측량도	기재사항 간소화 요망(일건서류 중 중복되는 기재 사항을 삭제하여 간소화토록 건의함.) 폐지요망(실제로 측량을 하지 않고있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또는 건의사항	비고	
② 준공검사신청 구비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 1조 민원사무처리 규정 "별표" 부산시 건축행정 처리 지침. 건축법 시행 규칙 제 1조	(계획도로상의 부지일 경우에 첨부) 사. 대지의 전경 사진 아.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자. 시멘트 가공 제품 소요량 신 고서 차. 공사시방서 카. 소방설비도	으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만 주고있 음.) 폐지요망(조작가능한 사진을 첨부하 는 실효성이 없음.) 폐지요망(첨부할 필요성이 없음.) 폐지요망(첨부 목적의 실효성이없음)	소방법 제32 조 참조.	
	"	타. 오물정화조의 구조도	첨부대상에서 제외토록 요망함. (오물정화조의 구조도 및 전기 설비 용량 계산서등은 각각 당해 법령에의 거 면허 및 등록 한 자에 한하여 처리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	파. 전기설비용량 계산서			
	"	하. 구조 계산서 등을 첨부토록하 고 있음.			
	"	2.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크 기가 설계원도 전지 그대로를 청사 진 복사하여 제출하고 있음.	도서의 크기를 건축허가 신청서 양식 식과 같은 규모의 크기로 축소 복사 하여 첨부토록함이 서류의 취급 및 관리상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설계원도 20매 이상 첨부를요하는 대 규모 건축 물에 한하여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 8조 건축행정지침	1.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서 가. 준공 신고서 나. 준공확인 보고서		폐지요망(준공신고서에 의거 확인토 록 요망함.)	
	건축법시행세칙 제9조의 2 시 요구 사항 오물청소법적용	다. 확인서 및 준공검사 점검표 라. 준공현장 사진 마. 정화조 준공필증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당해법령에 의거 첨부 시행되는 것 이므로 건물 준공검사 신청시는 제 외 요망. " "	건축법 제20 조및동시행령 제125조 참조
	체신부령 적용 시 요구 사항 건축행정 지침 시요구 사항	바. 구내통신 설비 공사 검사필증 사. 수용자 시설 조사표 아. 시멘트 가공제품 시험 성과표 자. 검사대상 기기 검사증(보이라)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당해 법령에 의거 첨부시행되는 것 이므로 준공검사 신청시는 첨부 제 외 요망.	건축법시행령 제 135조 참조 처리근거불명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참조
	건축법 제53조의5 시요구 사항	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카.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 합격 증. 타. 완성 검사 필증(가스)		당해 법령에 의거 첨부시행되는것이 므로 건축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제 외토록 요망함.	건축법제 53조 제 115조 참조
	"				
③ 주택건축공사감리	건축법 제 6조	주택건축 공사에 따른 시공상의 하 자등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공 사 감리자(건축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한 책임 한계와 처벌 규정등을 강화하여 주 도록 요망.	건축법시행령 제 120조 2참조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 사항	비고
④건축허가시 조건 부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 직권	1. 건축허가시 도로변의 축구 시공을 의무화 하여 건축주 자비 부담 설치토록 조건부 건축허가하고 있음.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만 되고 있음)	
경 기 지 부				
①후퇴 건축선 도로화 증빙서류 첨부		지목변경 분할작업 - 1.분할허가 2.분할신청 3.분할측량신청 4.지목변경신청 이러한 복잡한 분제가 있음.	분할허가에서부터 지목변경된 도로의 지적도 토지대장을 준공시 까지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경비 등이 낭비되고 있음(약20-30일 소요됨) 주택의 경우 건축사확인서로 같음 처리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조치요망.	
②현장 사진 첨부		착공신청시 착공사진 촬영하여첨부	시간 및 재료, 인력 및 필립낭비 (필름 통당 20-24매 이므로 현상후 현장 파악 난이하여 폐지요망)	
③통신설비설치에 따른 관할전신 전화국 경유한착공·준공확인 및 건축사확인 복명서 첨부 제도.		건축법상의무 규정 없음.	해당부서의 무성의 및 불친절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소모(폐지건의)	
④부합 민원서류 처리의 지연 및 복잡.		시간 낭비만 갖게 됨.	동일서류가 중복됨으로 간소화 요망	
⑤매지가 공유지분일 경우 동의서 첨부.		동의서 및 인감증명 받기 난이함.	동의서(인감증명첨부)를 폐지 하고 건축사 현지 확인서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폐지요망)	
⑥상수도 공채구입		불허가될 경우 상수도 공채는 불필요하게 됨.	현행 건축허가 신청시 상수도 공채를 첨부 제출토록하고 있는 것을 착공시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강 원 도 지 부				
①합동건축사무소의 업무범위	건축사법 시행령 제 25조 제 1항 제 1호 단서 규정 (건설부공고 제 137호)	합동사무소의 업무지역으로 지정된 군행정구역(인구20만 이상)의 경우 산간벽지의 단독주택도 합동업무(점점표작성 감리)에 포함시킴으로서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	단독주택의 업무 범위를 읍소재지 도시계획구역에만 한하도록 완화요망(삼척군)	
②건축보조사 신상변동 신고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2조 3항	건축보조사가 타시, 도 관할 구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여 신상변동 신고를 할 시 전출지, 시, 도 행정 사항과 전입지 시, 행정사항(구비서류)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신상변동 신고시 많은 불편이 있음.	건축보조사가 타, 시, 도 관할 구역으로 전출 신상변동 신고시에 구비서류를 행정상으로 통일토록 규정함을 건의함.	
③설계도서검토제	건축사법시행령 제 21조 제 2항	명예직인 지부장 또는 분소장이 매일 수시 신고되는 도서를 상근하여 검토할 수 없음.	폐지요망(실효성이 없음) 허가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허가함.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충남지부 ①건축허가 구비서류	건축법시행 및 행정지시	1. 정화조 신고 검사필증 2. 배출시설허가증(공해방지법) 3. 세멘트 강도 필증 4.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건축허가 관서에서는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 과정에 있어 설계도서 검토등 행정이 복잡다단한데 위서류 등 타 법규(건축법규정화)에 의한 서류신고 및 완결을 건축담당부서에서 검토, 신고, 검사 여부까지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1. 정화조 신고 검사필증 2. 배출시설허가증(공해방지법) 3. 세멘트 강도 필증 4.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건축허가 준공신청서 제출시 위서류는 폐지하고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위생 공해등 해당부서에 건축허가 준공사항을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신고, 검사처리토록 함이 타당함.
전북지부 ①건축허가 구비서류 ②준공검사원 제출시 민원인의 절차 불편 ③도로점용 사전 승인 ④전화시설 협의불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8조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조 6항. 건축법시행령 제 135조, 제 125조 시 협조 사항 건축법시행령 제 135조, 제 137조 2항	주택채권,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불허가시 환불이 곤란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가중. 준공검사원 제출시 전화국의 전화시설 검사필증 및 관계관서의 정화조 검사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하는 절차상의 불편 도로점용 불허가시 건축공사불가 전화시설 협의 불편 및 시설용량 과중.	허가서 교부시 면허세 납부와 동시 첨부토록 요망 준공 검사원 제출로 허가관서가 단일 처리 요망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 점용 승인 신청서를 첨부토록하여 관계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승인요망. 허가관서 내부 협의로 대치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전화국과 건축주 간에 협의토록 요망.
전남지부 ①건축허가사전협의에 따른 구비서류 1) 소방서협의(주택 제외) 2) 전화국협의(공통) 3) 정화위원회 심의(여관에 한함) 4) 미관지구심의위심의(공통)	소방법 전신전화 관계법 교육관계법 허가청조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소방법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소방관서로부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신전화관계법의 규정한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에 전화관서로부터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청 접수이전에 시교육청을 경유하여 도교육 위원회심의(월 1회 개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관심의용 도서 10부를 작성하여 심의(월 1회 개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허가청 파견 합동집무로 종합민원의 신속처리토록 요망 각허가청 파견 합동집무로 종합민원의 신속처리토록 요망. 1) 허가청 파견합동 집무 2) 정화위원회를 수시 개최로 민원 신속처리요망 1) 심의용 도서감축 2) 심의회 수시 계획

민원 사무 명	근 거 법 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 정 및 건 의 사 항
5) 허가수수료주택채권 수도공채소화필증첨부	허가청조례 주택건설촉 진법 내무부장관 승인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와 동시 에 허가수수료, 주택채권, 수도공채 소화필증을 각각 사전에 첨부 토록 규정하고 있음.	1) 불허가의 경우 민원인의 재정적 이 중부담이 없도록 허가증 교부시 에 소화필증을 첨부토록 요망.
6) 벽돌 검사필증 첨부	공산품 품질관리법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벽돌 검사 필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가공 협회 발행)	1) 당해 감독기관에서 제품 생산과정 부터 철저한 검사와 2) 건축사로 하여금 필증첨부 강요지 양요망.
7) 정화조검사필증첨부	보건위생관계법	준공검사와 동시에 정화조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허가청 위생계 발행)	허가청 자체내부 협의로 처리하고 건 축사에게 첨부 강요 지양 요망.
8) 도로일시 점용허가신 청	도로교통법	건축허가 신청시에 도면 작성하 여 민원실에 접수후 경찰서에 제 출하면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시 달되어 파출소에서는 현장조사후 경찰서에 전달된후 경찰서에서허 가청으로 통보되는 절차에 의하 여 처리되고 있음.	허가청에서 단일처리 요망
경 북 지 부			
①중복된 검사	건축허가 제도 개선책 지침	주택허가분에 대하여 년 2회 확 인 감사의 감사원감사, 내무부 감 사, 도청, 시청감사(1년 정기감사 6회)를 실시함에 있어 처벌 위 주 감사를 하고 있음.	년 2 회 확인 감사만 받도록 함과 동시 처벌 위주를 떠나 지도 감사로 실시토 록.
②건축허가시 사전 전화 국 협의 신청	건축법 시행령 135조	연면적 100m ² 이상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는 경우 전화 설치 장소까 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전 사전 관할전화국에 검토인을 받 는 과정에 각 전신전화국마다 사 무 취급 통일성이 없으며 준공검 사는 협의 공문에의하는 것이 아 니고 건축주를 소환 준공 신고를 별도 2부 작성 통신설비공사 협 의를 경유 제출케하고 있음. 회	사무 취급을 국단위로 통일성을 기하 도록 조치하고 준공시는 협의 공문으 로 처리토록 요망.
③준공시 건축주가 벽돌 구입 영수증 첨부		준공 검사 신청시 건축주가 벽돌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벽돌 공장을 관장하는 행정 당국에서 수시 감독을 대치하고 폐지 요망.
④대지의 전경사진 첨부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 령 제244호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전경 사 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한 대지에 한해서 전경 사진 첨부 토록.
경 남 지 부			
①건축허가시 구비서류	민원사무처리 규정 “별 표 2”	1. 첨부서류 종류 1) 확인서 2)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3) 건축허가 신청접점표	확인서, 건축허가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접점표는 내용의 중복사항이 많아 한가지 양식으로 줄일수 있음 (합동일 경우 매 양식마다 연대 서명)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 사항
<p>②준공신고 구비서류</p> <p>③건축허가 구비서류</p> <p>④건축허가</p> <p>⑤건축허가 구비서류</p> <p>⑥건축허가 구비서류</p>	<p>도행정지시</p> <p>울산시 내부결재</p> <p>건축법 시행령 159조 1항 1호</p> <p>규칙 제1조제1항표중(1)</p> <p>민원사무 처리 규정</p>	<p>4) 인감증명(건축주)</p> <p>5) 주민등록등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인감증명, 주소가 다를때)</p> <p>6) 현장사진</p> <p>2. 건축허가 신청서에 서류 접수와 동시 인지를 소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3. 준공검사서류에 세멘트 가공제품 강도검사필증 첨부</p> <p>4. 전신전화국장의 전화시설 설계 사전 승인서첨부.</p> <p>7. 인구 10만이하의 도시 및 읍, 면은 건설부 장관의 지정이 아니되고있음.</p> <p>9. 대지의 전경 사진</p> <p>10. 신청인 인감증명</p>	<p>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은 첨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p> <p>사진으로 현장 파악을 할 수 없으며 첨부할 필요성이 없음.</p> <p>반려시에도 유효화 하기 위하여 허가 처분 후 소인토록 해야 하겠음.</p> <p>매건마다 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검사치 않고 형식적으로 첨부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의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조적강도 확인서가 불필요하며 생산공장을 만위로 시험하는 제도로서 끝나야 되겠음.</p> <p>건축허가 신청시 전화국장의 승인서 생략하고 준공신고시 전화국장의 준공승인서 첨부.</p> <p>인구 10만이하의 도시를 지정치 않으므로서 소규모 도시의 건축허가에 차질이 많으므로 조속지정토록 요망함.</p> <p>실존하는 대지이며 주위 및 기존건물 지상장애물등이 있을때 사진 파악이 곤란함. 관계공무원 또는 건축사가 현지 답사 처리하고 있음.</p> <p>등기 및 중요업무행위 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됨.</p>
<p>제주도지부</p> <p>①건축허가 구비서류</p>	<p>행정지시</p> <p>건축법 시행규칙</p>	<p>1. 인감증명 첨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하므로서 민원인의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p> <p>2.부지증명 첨부 1) 대지의 증명은 등기부 등본으로 족하다고 사료되며 제주시의 경우 대지증명의 일환으로 부지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권자와 부지증명권자는 동일함에도 부지증명을 첨부케 하여 비용과 시간의 낭비등 민원인의 불편을 사고 있음. 2) 한편 부지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간단한 내용만 명기하여 사실상 실효를 견우지 못하고 있음.</p> <p>3.대지의 사진 첨부</p>	<p>폐지를 요망</p> <p>1) 부지의 확인은 건축허가 주무과하고 부지증명 주무과간에 상호조회(협조 전형식)로서 시행토록 시정요망.</p> <p>2) 지구, 지역명, 도로명, 도로폭등을 상세히 명시 하기를 바랍.</p> <p>폐지요망.</p>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시정 및 건의사항
②착공계 첨부서류	행정지시	<p>건축허가 서류에 대지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불편을 사고 있음.</p> <p>1. 벽돌검사증사본 및 판매확인증첨부.</p> <p>1) 시멘트 제품가공 무허가 업체에서 불량제품 생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착공계 제출시 위의 서류를 첨부토록하고 있는 바</p> <p>2) 벽돌의 소요량은 시공 과정에서 증감량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상 소요량을 사전에 확인할수 없는 것이며 또 허가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는 생산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타 업체에서도 수시 구입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착공전에 시멘트제품 가공업체를 선정하고 위 첨부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극히 형식적이며 민원인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사항임.</p>	<p>1) 준공신고시 사실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토록 시정하여 주시고</p> <p>2) 무허가 업체는 권한있는 허가관에서 적극 단속토록 조치 바람.</p>
③ 착공계 첨부 서류	오물청소법 제12조	<p>2.정화조 신고필증</p> <p>정화조의 설치는 대부분의 경우 본건물을 완공하는 단계에 가서야 시공하는 것임에도 법령때문에 착공전에 업자를 선정하고 설치 신고증을 첨부케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p>	<p>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시 오물청소법에 의한 정화조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하고 준공 신고시 업자의 설치 확인증을 첨부토록 시정할 것을 건의함.</p>
"	건축법 시행령 제 135조	<p>3.전화통신 신고필증.</p> <p>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 특히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부터 전화통신의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이 설치하는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 민원인이 요청시는 체신부의 실정에 따라서 전화통신설비를 해야하는 것인데도 착공전부터 전화통신 신고필증을 첨부케하여 불편을 사고 있음.</p>	<p>준공신고시 첨부토록 시정할 것을 건의함. (조건부 허가요망)</p>
④건축외관심의	건축법시행령 제 6조3항	<p>건축법시행령 제 6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내에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주도 건축미관심의 지침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p>	<p>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를 제외한 미관심의대상은 일정한 도로망을 기준해서 심의지구와 대상을 축소 조정함은 물론 심의절차도 간소화하여 줄것을 요망함.</p>

建築關係法規 改善意見

根據法令	現行制度上的 問題點	是正 및 改善事項																																										
<p>建築法 第42條의 2</p>	<p>○住宅建築工事に 따른 施工上에 있어서의 瑕疵等에 對한 責任을 無期限으로 工事 監理者가 專擔當한채 行政處分을 받고 있는 實情이므로 施工者等의 責任感이 결여되어 있음</p>	<p>○工事施工者 및 建築主에 對한 責任限界와 處罰 規定을 強化하여 不實違法 施工等의 發生所持를 根本的으로 防止할수 있는 措置가 實行될 必要인 外, 監理者의 責任期限을 工事瑕疵期間內로 하고, 正府인정자재(K·S제품등)에 關한 下자는 監理者의 責任限界에서 除外토록 해야하며, 監理業務에 相関이 없는 地籍에 關한 問題等에 對해서 는 監理者의 責任限界에서 除外토록 是正建議 要望함.</p>																																										
<p>建築法 施行令 第23條 5項</p>	<p>○20層以上이거나 間 30m이상인 建築物에 對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依한 構造技術士의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을 確認하여야 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이는 建築士法의 規定에 依한 建築士의 資格을 사실상 格하시키 조치로서 매우 不합리하다고 사료됨.</p>	<p>○타 法律에 依하여 建築에 關한 資格을 取得한 者가 建築士法에 依한 建築士의 資格에 優位한다는 것은 不合理的하며 現實的으로 상호 모순되므로 廢止토록 要望함. (법의 뒷받침 없이도 하자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특수 구조등에 對하여는 법적절차 이전에 구조 기술 사와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p>																																										
<p>建築法 施行令 第167條 2項</p>	<p>○建築法 施行令의 改正施行으로 同令 第167條 第2項의 但書規定이 삭제됨에 따라 基準未達 地의 利用이 不可能한 實情임. (대통령령 제9193호로 1978. 10. 30 개정됨)</p>	<p>○現行 建築法 施行令 第167條 第2項에 但書規定(다만, 동일한 전면 도로에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로서 일 단의 대지에 각개의 대지의 境界線 部分의 기동보, 방 화벽을 공용하고 외관상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 있게 설계하여 동시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 군수가 당 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기존건축물의 방화 벽을 공용하고 인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을 부활 삽입하여 기존인접 건물 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에는 건축이 가능케하여 개인 재산권의 보호와 아울러 세분화되어 있는 중심가의 토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배 려를 건의함.</p>																																										
<p>建築法 施行令 第159條 1項</p>	<p>○地地面積의 最小限度 規定에 있어서 商業地域은 200㎡이며 幅 20m以上の 道路에 6m以上 接한 地는 330㎡로 規定되어 있어 基準未達 地에 對한 利用이 不可能한 實情에 있음.</p>	<p>○既存 市街地에 對한 地의 最小面積을 완화하여 商業 地域은 100㎡로 하고 幅 20m以上の 道路에 6m 以上 接한 地에 對해서는 165㎡로 완화하도록 建議함.</p>																																										
<p>駐車場法 施行規則 第4條 2項</p>	<p>○路外 駐車場의 設備基準에 있어서 駐車形式에 따른 車路의 幅을 다음基準以上으로 하도록 規定 하고 있어서 建築物 또는 대지의 폭에 따라 다 소 不合理的한 경우가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368 1655 859 1924"> <thead> <tr> <th colspan="3">車路의 幅</th> </tr> <tr> <th>駐車形式</th> <th>출입구가 2개 以上 일 때</th> <th>출입구가 1개일 때</th> </tr> </thead> <tbody> <tr> <td>직행주차</td> <td>3.5m</td> <td>5.5m</td> </tr> <tr> <td>직각주차 평</td> <td>7.6m</td> <td>7.6m</td> </tr> <tr> <td>60도대향주차</td> <td>6.4m</td> <td>6.4m</td> </tr> <tr> <td>45도대향주차</td> <td>3.8m</td> <td>5.5m</td> </tr> <tr> <td>교차주차</td> <td>3.8m</td> <td>5.5m</td> </tr> </tbody> </table>	車路의 幅			駐車形式	출입구가 2개 以上 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직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평	7.6m	7.6m	60도대향주차	6.4m	6.4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p>○營業目的이 아닌 駐車場 建物以外的의 屋內 駐車場 으로 서 駐車台數 10台 未滿은 同 設備基準適用對象에서 除 外토록하고, ○駐車台數 10台 以上の 駐車場에 對해서는 폭이좁은 대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기둥이 있을때에는 동 기 준에 依한 차로의 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조정토록 建議함.</p> <table border="1" data-bbox="890 1655 1423 1895"> <thead> <tr> <th colspan="3">車路의 幅</th> </tr> <tr> <th>駐車形式</th> <th>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th> <th>출입구가 1개일 때</th> </tr> </thead> <tbody> <tr> <td>평행주차</td> <td>3.5m</td> <td>5.5m</td> </tr> <tr> <td>직각주차</td> <td>5.5m</td> <td>5.5m</td> </tr> <tr> <td>60도대향주차</td> <td>5.5m</td> <td>5.5m</td> </tr> <tr> <td>45도대향주차</td> <td>3.8m</td> <td>5.5m</td> </tr> <tr> <td>교차주차</td> <td>3.8m</td> <td>5.5m</td> </tr> </tbody> </table> <p>(위와같은 기준으로 할때 비록 자동차의 출입을 위한 회 전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할지라도 2~3회의 동작 으로 출입이 가능함.)</p>	車路의 幅			駐車形式	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평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5.5m	5.5m	60도대향주차	5.5m	5.5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車路의 幅																																												
駐車形式	출입구가 2개 以上 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직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평	7.6m	7.6m																																										
60도대향주차	6.4m	6.4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車路의 幅																																												
駐車形式	출입구가 2개이상일 때	출입구가 1개일 때																																										
평행주차	3.5m	5.5m																																										
직각주차	5.5m	5.5m																																										
60도대향주차	5.5m	5.5m																																										
45도대향주차	3.8m	5.5m																																										
교차주차	3.8m	5.5m																																										

根據法令	現行制度上の問題点	是正 및 改善事項
建築士法 施行令 第28条 第1項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録한 建築士中 그 一部가 单独事務所로 登録을 更新코자할 경우 신규등록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등록신청 구비서류가 중복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허다하며 비 현실적인 行政節次로서 不合理한 実情임.	○既 登録된 建築士事務所에 있어서는 合同 또는 单独事務所를 막론하고 “登録更新이 可能토록 改善하여 行政節次를 簡素化 要望함.
建築士法 施行令 第25条 3項 및 同 施行規則 第18条	○建築士法 施行令 第25条 第3項의 規定에 依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行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에 대하여 ○同 施行規則 第18条에 依거 单独주택으로 規定 하고 있고 单独事務所에서 单独住宅에 對한 建築士業務를 事實上 行할수 없도록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綜合事務所에서는 이를 處理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면허에 비 하여 매우 불합리한 모순이며 建築 民願人에게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는 実情임	○建築士法 施行規則 第18条의 規定에 依한 “单独住宅” 을 “20層以上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 以上の 건축물”로 改正하여 建築士法 第23条 3項에 明示된 건축 사 사무소 업무한계와 부합되도록 改善 施行을 建議함.
工業配置法 第7条 및 施行令 第8条 規則 第3条	○工場設置의 申告를 함에 있어서 그 處理期間이 20日간으로 되어 있어서 民願에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는 実情임.	○工場設置申告 處理期間을 同 申告書 接受와 同時 또는 5日以内 處理(申告畢証交付)될수 있도록 改善되어 아 할것으로 사료됨.
工業配置法 第7条 및 第35条	○工場設置申告를 함에 있어서 法 第7条 第1項 후 단의 規定은 工事着工前에 申告토록 되어 있으 며 法 第35条에는 工場設置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建築許可 等を 하지 못하 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이는 規定상호간의 모순 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합리 하다고 봄.	○工場設置의 申告時期를 法 第7条 第1項 후 단의 規定에 明示된 바와같이 建築許可를 得한 后 工場 “設置工 事 着工前”에 申告토록 함이 合理的이라 사료되오니 法 第 35条 후 단의 規定中 “建築許可等を 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工事의 着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改正토록 建 議 要望함.
工業配置法 第7条 1項 및 施行令 第7条 第1項	○工場設置申告의 對象에 따른 工場의 範圍에 있 어서 增加의 경우 기존공장건축 면적과 증설할 部分의 공장 건축면적을 합계한 面積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工場으로 되어 있어서 소 규모의 부속건물 증축시에도 申告對象에 該當되 므로 民願에 상당한 不便을 주고 있음. 따라서 申告범위의 완화와 세분화가 요망되고 있음.	○工業配置法 第7条의 規定에 依거 申告를 畢한 工場으 로서 製品의 增産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増築 (소 규모의 난방용 보일러실 등)의 경우에는 申告對象인 工 場의 範圍에서 除外토록 改善하여 民願을 簡素化 要望 建議하오니 善処바랍니다.
汚物清掃法 第12条 3項 및 同規則 第16 条1項에 따른지침 (건 설부령)	○建築物의 用途에 따른 液狀廢棄物 淨化槽의 處 理對象人員 算定基準에 의하면 住宅의 경우 “延 建坪 90m ² 이하의 境遇에는 15人으로 하고 90m ² 를 超過하는 延建坪面積 6m ² 마다 1人을 加算 한 容積의 淨化槽를 設置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現實적으로 볼때 建築主로하여금 필요이상의 경 제적 부담을 줄뿐아니라 자재의 낭비를 초래하 고 있음.	○액상 폐기를 淨화조의 處理對象人員 算定基準을 住宅의 경우 “延建坪 面積에 關係없이 10人以下 容積의 淨化槽 를 設置토록 改善 建議함. (原則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에 있어서는 常住人員이 대부분 10人以下일 뿐만아니라, 더우기 常 用人員을 감안해 볼때 容積 10人以下의 淨化槽로서 도 充足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新刊書籍案内 建築과 人間

供給처: 鍾路書籍(株) TEL. 722-2331

譯: 圓光大学校 崔宗鉉